

[별표 2] <개정 2017. 3. 27.>

간이세율(제96조 관련)

품 명	세율(%)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. 투전기,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, 수렵용 총포류 나. 보석·진주·별갑·산호·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, 귀금속 제품 다. 고급 시계, 고급 가방 라. 삭제 <2017. 3. 27.>	55 92만 6천원 +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50 37만 4백원 + 185만 2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
2. 수리선박(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)	2.5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. 모피의류,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나.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,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, 신발류 다. 녹용	30 25 32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. 다만, 고급모피와 그 제품, 고급용단, 고급가구, 승용자동차,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. 가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.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	20